

자동차부품제조원(E7-3) 비자제도 설명자료

- 2026.07.01. 한국자동차연구원 Academy 산업인력실 -

□ 자동차부품제조원(E7-3) 비자 시범사업

- (비자신설)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, 성형, 용접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(E7-3) '자동차 부품 제조원' 직종 신설
- (대상기업) 비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
- (시범지역) 경상북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광주광역시(향후 확대예정)
- (도입규모) 현재 연간 100명(금형 40명, 성형 30명, 용접 30명)(향후 확대예정)

< 자동차부품제조원(E7-3) 도입요건(안)>

대상자	대상 기업
①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+1년 경력 ③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④ 비이공계 유학생 중 훈련이수자	○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
세부요건	- (고용 추천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 - (기량검증)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의 기량검증 확인필요(유학생 포함) - (국민고용비율) 업체별 국민고용 인원의 30% 범위 내 - (임금 요건) GNI(국민총소득) 70% 이상: 3,508만원 - (한국어 능력)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보유자 - (유학생 특례) 이공계 유학생은 경력요건 면제 - (사업장 이동제한) 수도권 사업장 이동 불가

□ 자동차부품제조원(E7-3) 도입체계(안)

- (도입체계) 지역·산업 맞춤형 방식으로 기존 E7-3 비자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모델 도입
- (지산맞) 자동차산업은 지역에 특화되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입, 체류관리의 효율화를 도모
- (공공성과 국제협력) 송출국의 직업훈련기관이나 학교와 연계하여 훈련과정, 기량검증 및 선발의 투명성 제고
- (사업주 책무성) 기량검증, 선발 및 채용뿐만 아니라 체류관리, 인적자원개발 등에 사업주의 노력 강화

- **(도입절차)** 산업부 지정 기관(한자연)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

①사전준비 → ②사전수요제출 → ③기량검증 → ④예비추천 → ⑤고용추천 → ⑥사증발급 → ⑦입국 → ⑧국내교육 → ⑨현장투입

- **(부품기업확인서 발급) 광역 지자체장(도청, 광역시청)은 외국인 수요기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임을 확인**

- **(기량검증)**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을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공성있는 검증기준을 개발

- 금형, 성형, 용접 3개 직종과 관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를 기반으로 한 역량평가 실시

- **(검증인력)**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 POOL 구성

- 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와 산업별 역량체계(SQF)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구성
- 직종별 유관 협·단체와 연계하여 기량검증단 인력 POOL 구성

- **(외국인 유학생 활용)** 도입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E7-3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

- **(이공계)** 이공계 유학생이 졸업(졸업예정자) 후 기량검증을 통해 자동차부품제조원 E7-3 비자로 전환

* 이공계 전문학사 유학생은 경력요건 면제

- **(비이공계)** 비이공계 유학생 중 관련 분야의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^{*}를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통해 자동차부품제조원 E7-3 비자로 전환

* 훈련프로그램 이수 :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를 기반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증을 발급 받은 자

** 비이공계 유학생은 경력 1년 필요